

목 차

정 정 신 고 (보고)	1
주주총회소집공고.....	2
주주총회 소집공고.....	3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6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6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6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7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7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8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8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8
III. 경영참고사항	9
1. 사업의 개요.....	9
가. 업계의 현황	9
나. 회사의 현황	16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9
□ 재무제표의 승인.....	19
□ 정관의 변경.....	105
□ 이사의 선임.....	110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111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112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12
※ 참고사항.....	114

정정신고(보고)

2019년 03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3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중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의 ② 행사기간 항목	오기 수정	② 행사기간 : 2022년 3월 22일부터 2029년 3월 21일까지	② 행사기간 : 2022년 3월 22일부터 2026 년 3월 21일까지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03월 04일

회 사 명 :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구 자 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9(여의도동, NICE2사옥)
(전 화) 02-2122-5400
(홈페이지)<http://www.nicetc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강 명 구
(전 화) 02-2122-550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정관 제19조 및 상법 제542조의4와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03월 21일 (목)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9, NICE2사옥 지하 1층 이노베이션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9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규상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명수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우영제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송형근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추천인	회사와 최근3개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사 후보 (사내이사)	박규상	1966.8.15.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전자금융(주) 금융영업부장 한국전자금융(주) 금융사업본부 본부장 한국전자금융(주) ATM사업본부 본부장 (現) 한국전자금융(주)현금사업부문 부문장	이사회	-	-

이사 후보 (기타 비상무이사)	김명수	1969.5.20.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신용정보 전략기획단장 NICE홀딩스 전략기획본부장 NICE홀딩스 전략기획1실장 (現) NICE홀딩스CSO	이사회	후보자가 근무하는 회사(주 NICE홀딩스)와 경영자문 관 련 계약 체결	특수관계인 (임원)
이사 후보 (사외이사)	우영제	1954.6.25.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국민리스(주) 이사 한국전자금융(주) 운영본부장 한신편네트웍스(주) 대표이사 (現) 씨니캐피탈대부(주) 대표이사	이사회	-	-
이사 후보 (사외이사)	송형근	1957.10.11.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주매일신문사 독자서비스국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외래교수 주매일신문사 전무이사 (現) 주매일애드 대표이사	이사회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우영제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송형근 선임의 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경력 및 인적사항은 제3호 의안(사외이사 후보)을 참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http://evote.ksd.or.kr>
- <http://evote.ksd.or.kr/m>(모바일)

나.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9년 3월 11일 ~ 2019년 3월 20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20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

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제19기 배당은 주당 액면가의 22%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4일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 자 성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허세원 (출석률:100%)	우영제 (출석률:100%)	송형근 (출석률:100%)
			찬 반 여부		
1차	2018.01.31.	제1호 의안 : 합병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차	2018.02.08.	제1호 의안 : 자회사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NICE씨엠에스)	찬성	찬성	찬성
3차	2018.02.14.	제1호 의안 : 자회사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NICE씨엠에스)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의안 : 자회사 자금 단기대여 승인의 건(NICE씨엠에스)	찬성	찬성	찬성
4차	2018.02.23.	제1호 의안 : 자회사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NICE씨엠에스)	찬성	찬성	찬성
5차	2018.03.02.	보고안건 제1호 : '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의 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안건 제2호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보고	보고	보고
		제1호 의안 : 제18기(2017.1.1~2017.12.31)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의안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의안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4호 의안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제 채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5호 의안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6차	2018.03.20.	제1호 의안 : 복권 통합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출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7차	2018.03.22.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8차	2018.03.27.	제1호 의안 : 보증부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증액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9차	2018.04.19.	제1호 의안 : 지급보증 신규 약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0차	2018.05.02.	제1호 의안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1차	2018.05.17.	제1호 의안 : 자회사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NICE씨엠에스)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의안 : 자회사 자금 단기대여 승인의 건(NICE씨엠에스)	찬성	찬성	찬성
12차	2018.05.31.	제1호 의안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3차	2018.06.25.	제1호 의안 : 자금 차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의안 : 자회사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NICE씨엠에스)	찬성	찬성	찬성
14차	2018.07.19.	제1호 의안 : 보증부 전자단기사채 재발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의안 : 자회사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NICE씨엠에스)	찬성	찬성	찬성
15차	2018.11.23.	제1호 의안 : 본점 소재지 이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의안 : 지급보증 재약정 추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의안 : 내규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4호 의안 : 집행간부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5호 의안 : 임원 인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6차	2018.12.21.	제1호 의안 : 주차사업 확대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의안 : 나이스파크돈산㈜ 자금 대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7차	2018.12.31.	제1호 의안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의안 : 상근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의안 : 상근임원 보수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허세원 우영제 송형근	2018.03.02.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안건
		2018.03.02.	-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가결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제출의 건	가결
		2018.03.14.	- 외부감사인의 감사완료 보고의 건	보고안건

주) 상기 구성원은 모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입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3	1,200,000	108,000	36,000	-
기타비상무이사	2	1,200,000	-	-	-

주)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등을 포함하여 이사보수한도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영업거래 중 단일거래가 거래금액 기준으로 2018년도 별도 재무제표 매출액 대비 1/10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단위 : 억원)

거래 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영업거래 중 거래금액 기준으로 매출총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NICE씨엠에스 (계열회사)	외주용역비	2018.1.1~2018.12.31	318	15.2

※상기 비율은 2018년도 별도 재무제표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금융/VAN사업

금융/VAN 사업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ATM 관리를 대행해주는 ATM일괄관리사업과 회사가 보유한 자동화기기로 예금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TM VAN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TM일괄관리사업>

1) 산업의 특성

① 업무의 전문성

ATM 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H/W적인 기기의 특성 및 운영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노하우는 단순하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며 다년간의 운영경험상의 시행착오 등을 통해 축적됩니다.

② 자금관리 정확성

ATM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정확하고 투명한 자금관리입니다. ATM관리사업 Outsourcing 사업자는 자금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각 기기별로 일별 현금 충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기와 전산상 실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금관리의 전문성은 시행착오를 용납할 수 없는 특징이 있으며 회사와 같이 전문적인 자금관리 능력을 보유한 수행업체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ATM 관리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중요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③ 전국적인 네트워크

은행 자동화기기는 전국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Outsourcing 사업자도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를 구비해야만 합니다. 이 인프라는 관리센터, 현장 전문요원,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차량, 통신시스템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체 업무를 총괄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자동화기기 종합관리시스템(ATMS), Call Center 등도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365일 24시간 가동되어야 합니다.

④ 보안시스템

ATM 관리는 대량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안시스템은 외부의 침입,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차량, 사무실 등에 대한 보안설비와 비상상황시 경찰서, 경비회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또한 내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확한 통제시스템도 중요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ATM일괄관리사업은 은행 점외 CD/ATM 기기 및 CD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기기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점외 CD/ATM 기기에 대한

Outsourcing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일부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의 경우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관리 점외 CD/ATM 기기에 대한 Outsourcing이 확대될 경우 시장의 규모는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CD/ATM 기기는 점외에 비해 점내 및 점두에 설치된 기기가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점내 및 점두 기기에 대한 Outsourcing이 시작될 경우 점외 시장에 비해 시장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ATM일괄관리사업은 은행의 관리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태동한 사업으로 경기 변동 보다는 은행의 비용절감 노력과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쟁요소

ATM일괄관리사업과 관련되어 '06년도 이후, 금융기관의 업체 Dual화 정책 시행 등에 따라 시장 내 경쟁업체의 진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주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비스 품질 지표인 SLA평가와 연계된 Site 배분 정책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5) 시장점유율 등 시장여건

ATM일괄관리사업은 회사가 최초로 시장을 개척한 분야로 연결실체가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점유율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어 경쟁업체의 관리사이트 수를 기준으로 추정된 결과 연결실체의 시장점유율은 당기말을 기준으로 약 56% 내외로 추정됩니다.

6)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현금을 금융기관 ATM기에 장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경비업법상 호송경비업 허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ATM기 등 장비를 보호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 허가도 보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하여 각종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기는 하나 그 외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ATM VAN 사업>

1) 산업의 특성

① 금융서비스 대행

CD기 또는 ATM기기를 통한 예금지급 등의 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ATM VAN 사업자와 제휴시에도 엄격한 기준 및 실질적인 심사업무가 수반됩니다. 은행은 ATM VAN 사업자가 제휴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기술력, 시설과 인력규모, 보안대책 등에 관한 자격요건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심사업무를 통해 시재관리 등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전산망과의 접속에 대한 자체 보안성 심의등 안전대책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정보 보호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ATM VAN 사업자는 확실한 IT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대규모 네트워크

ATM VAN 사업에는 전산 네트워크와 물리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전산 네트워크란 자동화기기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를 은행에 전송하고 그 결과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외부 접속망, 자체 Host와 기기간의 내부 접속망을 말합니다. 물리적 네트워크는 실제 현장에 설치

되어 있는 기기를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자원을 말합니다.

③ 입지

ATM VAN 사업의 수익은 고객의 이용건수에 좌우됩니다. 기기의 이용건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편리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대한 상권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력과 입지를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자동화기기 설치대수는 현금수요 감소라는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제도 확대, 주5일제 정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자동화기기 보급율에도 불구하고 은행 영업점 이외 점외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동화기기가 은행 영업점 내 및 영업점에 부속된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의 접근성을 고려할 경우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점외 자동화기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설치장소도 지하철역, 국철역, 터미널, 공항 등의 공공장소에서 할인점, 편의점, 개별 마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티켓발권, 신용정보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결합하여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점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창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ATM VAN 사업은 경기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ATM VAN 사업 자체가 민간소비에 따른 현금수요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활성화 되어 민간소비가 증가할 경우 이용건수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가 발생하고 경기가 침체 될 경우 이용건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ATM VAN 사업과 관련되어 경비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등 인허가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나 사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벽은 없습니다. 다만, CD기 설치, C/S조직 구축, 운영 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ATM VAN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금융기관 제휴, 설치 장소의 확보 등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상기 요건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시장점유율 등 시장여건

ATM VAN사업은 산업규모가 크지 않고,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산업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용이치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사용의 일반화 및 업체들의 설치 대수 증가로 인해 기기 대당 유의미한 수준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기 대수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판단하는 방식 보다는 은행과 제휴하여 기기 대당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브랜드제휴 설치대수를 시장점유율의 지표로 판단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당기말 설치기기 대수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 연결실체의 시장점유율은 약 47% 내외로 추정됩니다.

6)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ATM VAN 사업자는 전자금융을 보조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보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인 검사를 받았으나,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기관과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ATM VAN사업은 부가통신사업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검사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화기기 사업>

1) 산업의 특성

여러가지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무인자동화기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티켓발매를 포함한 민간서비스와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와 활성화되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무인자동화기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무인자동화 기기는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정확한 업무처리 및 인건비 감소를 위한 것으로서 철도역사, 터미널을 중심으로 무인 발권을 하는 무인자동화기기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영화관, 각종 전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티켓 판매, 무인 안내 등을 위한 무인 자동화 기기의 설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외의 분야에서도 무인 식권 발매기 등 다양한 분야의 무인자동화 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무인자동화기기 사업은 터미널, 영화관, 은행, 관공서, 식당 등 이용자가 많은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고객서비스 제고 차원 및 인건비 등 비용 절감 차원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경기변동 보다는 고객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무인자동화기기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업체의 사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벽은 없습니다.

5) 시장점유율 등 시장여건

무인자동화 기기 사업은 최근에 시장이 개척된 분야로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산업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6)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무인자동화기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및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자동화기기의 용도,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인주차 사업>

1) 산업의 특성

무인주차사업은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신종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차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사업이 개시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운영업체는 주차장의 무인화를 통하여 관리비용을 절감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토지 보유자는 무인주차 사업자에게 주차장 부지를 임대함으로써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차량보유자는 적정한 가격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추후 기술 발전 및 차량 관련 법규 변경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무인주차장은 소규모 자투리 부지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무인주차장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리 비용이 유인주차장 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무인주차장을 통하여 합리적 가격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바,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무인주차 사업은 유가 상승, 자동차 보유 규제 등 자동차를 소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무인주차 사업과 관련되어 신규업체의 사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벽은 없습니다. 다만, 신속한 A/S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무인주차장비에 대한 투자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점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시장점유율 등 시장여건

무인주차장 사업은 최근에 시장이 개척된 분야로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산업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6)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무인주차 사업과 관련하여는 주차장법의 일부 내용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

1) 산업의 특성

가맹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결제장비, KIOSK 등의 유통, 관련 S/W개발과 운영, 지급결제 연관 서비스, 기타 가맹점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가맹점의 확보가 중요하며, 결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VAN 사업과도 관련이 있으며, 그로 인해 신용카드 VAN업체와 협업은 사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신용카드 사용량의 증가, 신규 전자결제수단 등의 등장으로 기존 수기 방식의 주문/재고/매출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기존 업체의 매출관리 방식이 자동화됨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장비 및 S/W의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개인고객의 결제와 관련된 사업의 특성상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상황에 따른 신규 발생 가맹점의 증감, 소비자 구매 증감에 따른 가맹점 네트워크서비스 수요의 증감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4) 경쟁요소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으며 신용카드VAN사와 가맹점에

필요한 장비 등과 관련된 다수의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타 경쟁자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5) 시장점유율 등 시장여건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은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산업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6)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 내용 중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없으나, 신용카드VAN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그 부속법령의 일부 조항의 규율을 받습니다.

(2) 현금수송사업

1) 산업의 특성

현금수송사업은 현금유통이 많은 모든 사업장의 현금수납, 수송, 정산 등 현금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전문적인 호송요원과 특수장비, 특수차량을 갖추고 현금 및 유가증권을 운송하며 금융기관, 백화점, 할인점, 공항, 터미널 등에서 수납되었거나 필요로 하는 현금 등을 수취 및 공급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수송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전문성

현금수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현금처리 능력 및 운영 Know-how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수송사업은 착오를 용납할 수 없어 전문적 수송 능력을 보유한 수행업체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진출하기 어려운 중요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② 교환시재 공급능력

현금수송사업의 서비스 제공 분야 중 하나는 교환시재의 공급입니다. 1만원권 지폐 및 주화의 사용이 많음에 따라 많은 양의 교환시재가 필요합니다. 교환시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교환시재 공급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현금수송업무는 대표적인 3D업종이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업종으로 현재 현금이 유통되는 사업장에서는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아웃소싱 시장규모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뿐만 아니라 고가물, 귀금속, 주요 서류 등의 운송에 있어서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양의 현금이 유통되고 있는 곳에서의 교환시재 수요 및 현금수납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현금수송사업은 은행 및 대형 할인점 등 많은 양의 현금이 유통되는 사업 운영자가 그 고객이며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경기변동 보다는 고객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경쟁요소

현금수송사업은 업무의 전문성, 교환시재 공급능력이 요구되며, 현금수송을 위한 차량 및 보

안장비와 경비인력이 필요하므로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우며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점은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현금 수송과 관련하여 경비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경비업법 준수와 관련하여 경찰청 등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3) POS 및 결제장비 관련사업

1) 산업의 특성

POS는 Point Of Sales System의 줄임말로 판매시점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POS는 판매정보를 판매 즉시 수집하여 컴퓨터에 보관하고 그 정보를 발주, 매입, 배송, 재고 등의 정보와 연계하여 컴퓨터로 가공, 처리함으로써 매출분석은 물론 동향 파악 및 경영분석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는 장비입니다. 최근에는 결제 기능을 추가하여 결제 단말기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결제장비 관련 사업은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통신장비 및 기타 부속 장비 등을 개발, 공급하는 사업이며, Fintech 발전에 따른 결제 수단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POS 및 결제장비 관련 사업은 판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매장, 결제장비를 필요로 하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비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고객이 신용카드 가맹점인바, 신용카드 VAN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보안 인증을 받은 단말기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POS 및 결제단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신용카드 사용량의 증가, 신규 전자결제수단 등의 등장으로 기존 수기 방식의 주문/재고/매출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기존 업체의 매출관리 방식이 자동화됨에 따라 POS H/W, 결제장비 및 S/W, 그에 대한 유지보수의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결제와 관련된 사업의 특성상 경기변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경기상황에 따른 신규 발생 가맹점의 증감에 따라 POS 또는 결제장비의 수요가 증감하게 되므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4) 경쟁요소

POS, 결제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으며 다수의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간 경쟁요소는 다양한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 적정한 가격경쟁력, 유지보수 관련 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인증을 거친 장비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인증 관련 기술력 보유 여부가 경쟁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5) 시장점유율 등 시장여건

POS 및 결제장비 관련 사업은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은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산업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6)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POS사업, 결제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없으나, 결제단말기 및 결제기능이 포함된 POS 단말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보안기능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주요 사업별 영업개황

① 금융/VAN 사업

가) ATM 관리부문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CD VAN 사업 부문

전국에 있는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금지급기를 설치하여 365일 연중무휴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중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신규점포에 대한 현금지급기 설치를 진행하는 등 우량장소 발굴을 위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 서비스 부문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대형 급식소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이용 고객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무인식권 발매기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자동화기기(KIOSK) 판매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출입이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무인주차장 운영 또는 무인 설비를 설치한 주차장 위탁 관리 서비스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수송 사업

전국의 대형 쇼핑몰, 대형 할인점, 은행 등 현금의 유통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POS 및 결제장비 관련 사업

POS 및 결제장비는 신용카드 VAN 사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또한 유통, 요식업체 등 매출관리를 필요로 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④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은 신용카드 VAN의 설치, 유지보수 등 위탁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판매방법 및 조건

연결실체는 ATM 관리사업의 경우 주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CD VAN 사업은 현장조직 및 제휴업체를 통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여 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송사업의 경우 현금유통량이 많아 정산 및 수송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인주차 사업의 경우 차량의 운행량은 많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부지 소유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POS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VAN사업자 등 결제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결 실체가 영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한 판매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판매전략

① 금융/VAN사업

가) ATM 관리부문

ATM 관리사업은 전국 28개 지사 및 15개 자금센터, 13개의 CS센터의 인프라, 전문인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결실체는 CD/ATM 관리사업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CD/ATM 관리사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기관 확대와 SITE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CD VAN 사업 부문

현금지급기는 전국에 유동인구가 많고 현금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설치기기에 대해서 기기운영의 전산화를 통한 실적분석을 바탕으로 실적 부진 기기에 대한 재배치와 보급형 CD기의 신규설치를 통하여 매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 서비스 부문

KIOSK, 무인주차 등 기타 사업부문에서는 연결실체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타사 대비 강점으로 차별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중인 연결실체의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수송 사업

현금수송 사업은 은행 및 대형유통점 등 대량 현금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점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운송대상물도 상품권, 고가물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③ POS 및 결제장비 관련 사업

POS는 요식업 및 유통업 등의 업종에서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가능하게 해 주는 시스템으로 최근들어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결제 단말기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관련 산업, 핀테크, O2O사업과의 연계 등 POS 기능 및 POS를 통한 서비스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바, POS를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장비 사업도 핀테크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결제 수단 등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④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골프장과 같은 건당 고액 결제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가맹점에 보상금 제공 등이 금지됨에 따라 결제장비 장애시 신속한 대응 및 A/S 등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하는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ATM일괄관리사업은 회사가 최초로 시장을 개척한 분야로 연결실체가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점유율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

어 경쟁업체의 관리사이트 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연결실체의 시장점유율은 당기말을 기준으로 약 56% 내외로 추정되며, ATM VAN사업은 산업규모가 크지 않고,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산업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용이치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기말 설치기기 대수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 연결실체의 시장점유율은 약 47% 내외로 추정됩니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산업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ATM관리 시장의 경우 금융기관의 ATM 관리와 관련된 Tota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업체가 많지 않아 공급자의 수가 많지 않으나, 수요자가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경쟁이 치열하며,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모색을 위한 비용절감 등 정책수립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CD VAN사업의 경우, 기기제조업체, CD VAN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시장에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으며, CD VAN사업은 국내 경제상황 및 그에 따른 내수소비규모 변동 및 결제수단의 발달 등 현금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의하여 시장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금물류사업은 대형 유통업체 등 현금의 유통이 활발한 업체가 수요자이며, 최근에는 중소형 유통업체, 운수업체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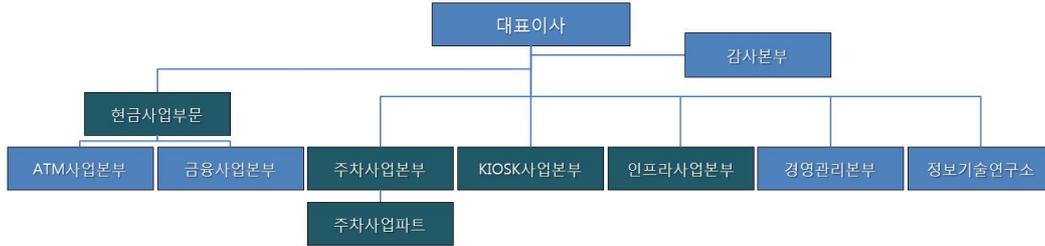
주차사업은 당사에서 직접 주차장을 임대하여 무인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기존에 운영중인 주차장을 무인화하여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로서는 기존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방식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맹점 대상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사업 및 POS/결제장비 제조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수요자인 사업장, 가맹점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시장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속 법령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기술적 대응, 영업정책 대응 등) 여부에 따라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회사는 2014년부터 무인주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주차 사업은 주차장업과 관련된 당국의 규제가 증가하지 않는 한,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이므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주차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적절한 유지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년간의 ATM관리 및 CD VAN 사업에서의 CS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업체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 주차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한국전자금융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서술된 "III.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이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한국전자금융(주) 연결 재무제표

(1) 연결 재무상태표

제 19 기 2018.12.31 현재

제 18 기 2017.12.31 현재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19기	제18기
자 산		
I.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93,123,260,645	207,729,205,92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580,433,851	30,299,058,512
단기금융자산	5,618,100,000	4,571,400,000
재고자산	3,730,492,545	2,296,182,349
기타유동자산	5,550,203,800	4,994,165,597
기타금융자산	58,155,827	42,819,936
유동자산합계	237,660,646,668	249,932,832,314
II.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자산	5,789,900,652	4,423,572,820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20,480	100,020,480
관계기업투자주식	7,860,648,319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12,726,624	512,726,624
유형자산	84,688,788,291	69,011,794,550
무형자산	47,551,629,724	49,846,895,766
이연법인세자산	14,985,321,066	-
기타금융자산(비유동)	11,070,653,137	7,248,557,331
기타비유동자산	630,817,223	209,162,748
비유동자산합계	173,190,505,516	131,352,730,319
자 산 총 계	410,851,152,184	381,285,562,633
부 채		
I.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2,121,893,289	27,596,506,304
단기차입금	121,797,244,383	113,082,728,402
단기사채	24,805,378,291	14,902,390,523
당기법인세부채	1,221,718,651	2,521,177,706
기타유동부채	7,592,524,492	7,571,473,771
기타금융부채	1,148,652,400	561,082,000
유동부채합계	188,687,411,506	166,235,358,706
II.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52,000,000,000	54,250,000,000
순확정급여부채	4,219,386,485	2,034,151,061
이연법인세부채	-	907,554,966
복구충당부채	899,878,716	690,382,338
기타비유동부채	61,722,557	61,722,55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비유동부채합계	57,180,987,758	57,943,810,922
부 채 총 계	245,868,399,264	224,179,169,628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57,486,769,569	120,974,203,570
자본금	17,322,864,000	13,007,504,500
기타불입자본	33,862,707,239	17,547,428,140
기타자본구성요소	(97,633,263)	-
연결이익잉여금	106,398,831,593	90,419,270,930
II. 비지배지분	7,495,983,351	36,132,189,435
자 본 총 계	164,982,752,920	157,106,393,00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10,851,152,184	381,285,562,633

(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9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제 18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19기	제18기
I.영업수익	294,423,482,228	241,043,735,702
1.상품매출	69,225,647,085	61,352,785,783
2.제품매출	60,417,656	32,299,412
3.용역매출	225,137,417,487	179,658,650,507
II.매출원가	(269,510,805,612)	(219,987,603,148)
1.상품매출원가	(59,461,557,427)	(54,657,031,289)
2.제품매출원가	(71,970,162)	(30,512,973)
3.판매비와관리비	(209,977,278,023)	(165,300,058,886)
III.영업이익	24,912,676,616	21,056,132,554
IV.금융수익	745,591,720	363,554,959
V.금융비용	(6,663,182,437)	(3,101,287,796)
VI.관계회사지분법손실	(615,680,831)	-
VII.기타수익	959,947,901	656,289,517
VIII.기타비용	(370,702,917)	(463,875,303)
IX.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968,650,052	18,510,813,931
X.법인세수익(비용)	(6,684,245,069)	(2,079,732,099)
XI.연결계속영업이익	12,284,404,983	16,431,081,832
XII.연결중단영업손실	-	-
XIII.연결당기순이익	12,284,404,983	16,431,081,832
XIV.기타포괄손익	(1,745,890,477)	(793,393,999)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포괄손익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648,257,214)	(793,393,999)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포괄손익:		
지분법자본변동	(97,633,263)	-
XV.총포괄이익	10,538,514,506	15,637,687,833
XVI.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		
(1) 지배기업소유지분	21,040,465,324	15,504,582,671
(2) 비지배지분	(8,756,060,341)	926,499,161
XVII.총포괄손익의 귀속 :		
(1) 지배기업소유지분	19,178,218,146	14,771,003,448
(2) 비지배지분	(8,639,703,640)	866,684,385

XVII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702	596

(3) 연결 자본변동표

제 19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제 18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연결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총계
2017년 1월 1일	13,007,504,500	17,382,602,069	-	77,729,468,202	8,352,899,948	116,472,474,719
자본의 변동	연결당기순이익	-	-	15,504,582,671	926,499,161	16,431,081,83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733,579,223)	(59,814,776)	(793,393,999)
	배당	-	-	(2,081,200,720)	-	(2,081,200,720)
	종속기업지분취득	-	164,826,071	-	-	26,912,605,102
2017년 12월 31일	13,007,504,500	17,547,428,140	-	90,419,270,930	36,132,189,435	157,106,393,005
2018년 1월 1일	13,007,504,500	17,547,428,140	-	90,419,270,930	36,132,189,435	157,106,393,005
전기오류수정	-	-	-	(434,639,756)	(186,274,181)	(620,913,937)
자본의 변동	연결당기순이익	-	-	21,040,465,324	(8,756,060,341)	12,284,404,983
	지분법자본변동	-	-	(97,633,263)	-	(97,633,26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1,764,613,915)	116,356,701	(1,648,257,214)
	배당	-	-	(2,861,650,990)	-	(2,861,650,990)
	종속기업 지분취득	-	239,664,099	-	-	(538,484,099)
	종속기업과의 합병	4,315,359,500	16,075,615,000	-	-	(19,271,744,164)
2018년 12월 31일	17,322,864,000	33,862,707,239	(97,633,263)	106,398,831,593	7,495,983,351	164,982,752,920

(4) 연결 현금흐름표

제 19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제 18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19기	제18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159,486,110	39,003,089,776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46,904,031,611	43,123,083,658
이자의 수취	375,646,020	306,298,042
이자의 지급	(6,314,600,342)	(2,910,097,451)
법인세 납부	(21,805,591,179)	(1,516,194,47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264,041,721)	23,941,362,885
단기금융자산의 처분	9,107,389,764	2,100,080,000
장기금융자산의 처분	497,099,200	1,859,496,349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1,835,663,090	535,806,500

유형자산의 처분	52,892,786	320,030,654
단기대여금의 감소	30,000,000,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2,000,000,000)	(2,000,000,000)
단기금융자산의 취득	(8,764,385,164)	(871,4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500,000,000)
장기금융자산의 취득	(2,823,427,032)	(3,867,111,200)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처분	-	(1,026,114,490)
기타금융부채(비유동)의 처분	(6,464,207,440)	-
유형자산의 취득	(32,212,647,738)	(20,770,427,535)
무형자산의 취득	(1,592,099,187)	(385,888,136)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8,900,320,000)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유출)	-	51,589,794,743
영업양수도로 인한 순현금유입(유출)	-	(2,827,004,000)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215,900,000)
III.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494,147,241)	39,129,293,205
단기차입금의 차입	1,113,193,657,166	341,671,220,241
단기차입금의 상환	(1,143,479,141,185)	(366,695,531,839)
장기차입금의 차입	11,000,000,000	53,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250,000,000)	(1,338,9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단기사채의 발행	100,567,077,589	59,902,390,523
단기사채의 상환	(90,664,089,821)	(45,000,000,000)
종속기업투자지분의 일부매입	-	(328,685,000)
배당금의 지급	(2,861,650,990)	(2,081,200,720)
자기주식의 취득	-	-
IV.현금의증가(I + II + III + IV)	(14,598,702,852)	102,073,745,866
V.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207,729,205,920	105,733,056,999
VI.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7,242,423)	(77,596,945)
VII.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	193,123,260,645	207,729,205,920

(5) 한국전자금융(주)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제19(당)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8(전)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연결실체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이하 "연결실체"라 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00년 1월 11일 설립되었으며, 동년 4월 1일에 한국신용정보(주)의 금융사업을 인수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은행 기계화코너에 대한 일괄관리 및 은행공동 CD/ATM 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06년 7월 14일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최대 주주는 (주)NICE홀딩스로서 지분율은 35.28%입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 개요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소재지	결산월	지분율(%)		주요영업활동
			당반기말	전기말	
나이스씨엠에스	대한민국	12월	90.03	90.03	현금수송 사업
오케이포스	대한민국	12월	72.38	72.38	POS 단말기 사업
무노스	대한민국	12월	70.00	70.00	ERP구축사업
나이스핀링크	대한민국	12월	-	50.00	CD VAN 사업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현황

당기 중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유
나이스핀링크	연결실체에 흡수합병되어 제외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와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 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19년 3월 4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19년 3월 2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3)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2018년 공시사항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과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 및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

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아래 ② 참고).

경영진은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연결실체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투자사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동사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회사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동 회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매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던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단기매매항목도 아니고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도 아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의 측정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한 금융상품은 계속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항목으로 측정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식 ⑤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의 다른 재분류사항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실체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ii) 리스채권, iii)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실체는 그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 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 적용일에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자산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변경 중 하나는 발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연결실체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부채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⑤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④ 일반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회피회계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일 관련 공시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연결실체가 기존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했었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재분류하기로 선택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일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도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039호	재측정	기준서 제 1109호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0,299,059		30,299,059
출자금 등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12,727		512,727
임차보증금 등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00,020		100,020
장단기금융상품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7,291,377		7,291,37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8,994,973		8,994,973
차입금 및 사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27,596,506		27,596,506
임대보증금 등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82,235,119		182,235,119
금융보증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561,082		561,08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에 따른 추가 손실충당금은 없으며, 연결실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함에 따라 재분류하도록 선택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도 없습니다. 또한 연결실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인식을 위한 5단계 모형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특정 사례를 다루기 위하여 광범위한 규범적인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규정의 내용 및 연결실체가 적용한 회계정책은 아래 '(6) 수익인식'에 기재되어 있으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 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아니며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때때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영향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는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적용하는 방법(완전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수정소급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며,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② 리스의 식별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여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 제1116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리스의 정의는 주로 통제모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식별되는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 경우에 사용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상 변경된 리스의 정의가 리스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계약의 범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ㄱ. 운용리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았던 운용리스의 회계처리가 변경되며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 측정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
- 현금지급액을 현금흐름표에서 원금(재무활동)과 이자(영업활동)로 구분하여 표시

동 기준서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총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종전 규정을 대체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에 대해 리스료를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리스

금융리스에서의 자산과 관련하여 동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의 주된 차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의 측정에서 발생합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요구되었던 최대보증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하여 인식합니다. 최초 적용일에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리스자산을 사용권자산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동 기준서 하에서도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한 공시사항이 변경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

연결실체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도상환특성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옵션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조기상환의 원인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손상규정 포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사항(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손실을 배분하거나 손상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 장부금액의 조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기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래를 최초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개정사항은 관련된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른 이후에도 특정 차입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계산할 때 일반차입금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03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기업이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측정 대상 이전보유지분은 공동영업과 관련하여 인식되지 않은 자산, 부채 및 영업권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당사자가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업이 보유한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사항들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게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를 결정할 때 갱신된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 전후에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하고, (확정급여제도가 초과적립상태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동 기준서는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 인식 후에 결정되며,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측정과 관련된 문단이 개정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제도의 변경 후의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

를 결정하기 위해 재측정에 사용된 갱신된 가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순이자의 경우, 개정사항에서는 제도의 개정 이후 기간 동안의 순이자는 동 기준서 문단 99에 따라 재측정된 순확정 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여산정함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대한 이번 개정사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제도의 개정, 축소 및 정산에만 점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개정)

동 개정사항은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와 관련하여 문단 한129.1에서 언급하는 '계약'의 의미를 '개별 계약'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더라도 공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수익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한45.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용역계약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한129.1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수익 기준서에 비해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대상 계약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제정)

동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은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해석서를 완전소급법을 적용하거나 비교정보를 소급해서 재작성하지 않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여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

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다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6)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은행 기계화코너에 대한 일괄관리 및 은행공동 CD/ATM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1) 재화의 판매 (2) ATM 관리 등 용역 제공 (3) 기타 서비스제공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7)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주석 2.(9)참고)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9)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절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절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 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1)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

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 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

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40년
기계장치	5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임차점포시설물	4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

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원가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 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경제적·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

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

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0)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가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련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가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9)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상세한 주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연결실체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 한국전자금융(주) 별도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제 19 기 2018.12.31 현재

제 18 기 2017.12.31 현재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19기	제18기
I.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75,875,958,460	104,608,744,23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2,920,383,851	22,970,098,23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00,000,000	-
재고자산	1,241,313,773	1,410,033,420
기타유동자산	4,015,902,157	3,770,546,650
기타금융자산	1,390,685	7,853,425
유동자산합계	204,554,948,926	132,767,275,970
II.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자산	5,789,900,652	4,328,982,8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0,020,480	100,020,480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44,128,481,577	74,067,613,487
유형자산	76,922,412,814	44,358,757,826
무형자산	23,898,519,682	3,414,284,303
이연법인세자산	15,873,044,927	1,630,135,193
기타금융자산	10,001,716,098	5,015,133,460
기타비유동자산	608,359,999	199,584,987
비유동자산합계	177,322,456,229	133,114,512,556
자 산 총 계	381,877,405,155	265,881,788,526
I.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6,941,209,660	17,643,148,246
단기차입금	114,297,244,383	55,750,000,000

단기사채	24,805,378,291	14,902,390,523
당기법인세부채	964,527,510	1,756,961,708
기타유동부채	2,914,337,772	3,429,203,815
기타금융부채	1,108,812,947	680,962,000
유동부채합계	171,031,510,563	94,162,666,292
II.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51,000,000,000	52,250,000,000
순확정급여부채	3,044,737,543	912,016,972
복구충당부채	899,878,716	690,382,338
기타비유동부채	61,722,557	-
비유동부채합계	55,006,338,816	53,852,399,310
부 채 총 계	226,037,849,379	148,015,065,602
자 본		
I. 자본금	17,322,864,000	13,007,504,500
II. 기타불입자본	41,444,409,695	18,343,171,679
III. 이익잉여금	97,072,282,081	86,516,046,745
자 본 총 계	155,839,555,776	117,866,722,92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81,877,405,155	265,881,788,526

(2) 포괄손익계산서

제 19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제 18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19기	제18기
I. 영업수익	208,903,836,777	153,091,197,071
상품매출	10,784,265,111	7,328,524,890
용역매출	198,119,571,666	145,762,672,181
II. 영업비용	(185,100,213,589)	(134,749,613,580)
상품매출원가	(8,292,185,379)	(5,682,079,998)
판매비와 관리비	(176,808,028,210)	(129,067,533,582)
III. 영업이익	23,803,623,188	18,341,583,491
IV. 금융수익	621,375,817	765,064,443
V. 금융비용	(6,173,650,127)	(2,928,118,117)
VI. 기타수익	332,956,383	273,443,256
VII. 기타비용	(159,678,080)	(54,838,162)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424,627,181	16,397,134,911
IX. 법인세비용	(2,916,401,570)	(2,881,719,351)
X. 당기순이익	15,508,225,611	13,515,415,560

XI. 기타포괄손익	(2,090,339,285)	(483,910,82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포괄손익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090,339,285)	(483,910,828)
XII. 총포괄이익	13,417,886,326	13,031,504,732
XIII. 주당이익	518	520

(3) 자본변동표

제 19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제 18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단
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총계
2017년 01월 01일		13,007,504,500	18,343,171,679	75,565,742,733	106,916,418,912
자본의변동	당기순이익	-	-	13,515,415,560	13,515,415,56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483,910,828)	(483,910,828)
	배당	-	-	(2,081,200,720)	(2,081,200,720)
2017년 12월 31일		13,007,504,500	18,343,171,679	86,516,046,745	117,866,722,924
2018년 01월 01일		13,007,504,500	18,343,171,679	86,516,046,745	117,866,722,924
자본의변동	당기순이익	-	-	15,508,225,611	15,508,225,61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2,090,339,285)	(2,090,339,285)
	배당	-	-	(2,861,650,990)	(2,861,650,990)
	합병으로인한증감	4,315,359,500	23,101,238,016	-	27,416,597,516
2018년 12월 31일		17,322,864,000	41,444,409,695	97,072,282,081	155,839,555,776

(4) 현금흐름표

제 19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제 18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19기	제18기
I.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6,668,802,708	31,574,544,691
영업에서창출된현금	25,332,523,761	34,675,033,600
이자의수취	222,179,755	357,240,626
이자의지급	(5,958,002,455)	(2,336,927,432)
법인세납부	(2,927,898,353)	(1,120,802,103)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9,307,055,581	(65,981,890,617)
단기대여금의 감소	12,500,000,000	22,000,000,000
단기금융자산의 처분	960,000,000	2,100,080,000

장기금융자산의 처분	402,539,200	1,859,496,349
장기기타채권의 처분	1,943,960,690	444,629,000
유형자산의 처분	21,915,516	259,336,632
단기금융자산의 취득	(500,000,000)	(300,000,000)
영업양수도로인한순현금유출	-	(756,004,000)
합병으로인한순현금유입	70,747,450,448	-
장기금융자산의 취득	(2,821,457,032)	(3,855,291,200)
장기기타채권의 취득	(6,066,407,440)	(886,666,490)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8,900,320,000)	(39,168,136,910)
유형자산의 취득	(30,775,937,151)	(19,466,729,898)
무형자산의 취득	(704,688,650)	(212,604,100)
단기대여금의 증가	(7,500,000,000)	(28,000,000,000)
III.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5,278,574,161	42,821,189,803
단기차입금의차입	1,117,269,158,746	142,523,000,000
장기차입금의차입	10,000,000,000	51,000,000,000
사채의발행	24,902,987,768	59,902,390,523
사채의상환	(15,000,000,000)	(45,000,000,000)
단기차입금의상환	(1,109,031,921,363)	(163,523,000,000)
배당금의지급	(2,861,650,990)	(2,081,200,720)
IV.현금의증가(I + II + III + IV)	71,254,432,450	8,413,843,877
V.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104,608,744,239	96,209,327,929
VI.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2,781,771	(14,427,567)
VII.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	175,875,958,460	104,608,744,239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현금배당 포함)

제 19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제 18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단
위 : 원)

과 목	제19(당)기		제18(전)기	
I.미처분이익잉여금		94,092,734,253		83,822,664,016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0,674,847,927		70,791,159,284	
2. 당기순이익	15,508,225,611		13,515,415,560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090,339,285)		(483,910,828)	
II.이익잉여금처분액		(3,669,974,528)		(3,147,816,089)
1. 이익준비금	333,634,048		286,165,099	

2. 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110원(22%) 전기: 110원(22%)	3,336,340,480		2,861,650,99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0,422,759,725		80,674,847,927

(6)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

구 분		제 18 기	제 17 기
주당배당금(원)	보통주	110	80
	우선주	-	-
시가배당율(%)	보통주	1.0	1.3
	우선주	-	-
배당금 총액(원)		2,861,650,990	2,081,200,720
당기순이익(원)		13,515,415,560	12,782,332,292

(7) 한국전자금융(주)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1. 회사의 개요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0년 1월 11일 설립되었으며, 동년 4월 1일에 한국신용정보(주)의 금융사업을 인수 하였습니다. 당사는 은행 기계화코너에 대한 일괄관리 및 은행공동 CD/ATM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6년 7월 14일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최대 주주는 (주)NICE홀딩스로서 지분율은 35.28%입니다.

한편, 당사는 당기 중 인프라 통합 및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하여CD VAN 서비스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나이스핀링크를 2018년 1월 31일(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비율(당사 : (주)나이스핀링크) 1: 4.315로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1,128억원과 6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주식 8,630,719주(액면가액 43억원)가 신규로 발행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19년 3월 4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19년 3월 2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3)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공시사항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과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 및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사의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아래 ② 참고).

경영진은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연결실체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투자사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동 사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회사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동 회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매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던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단기매매항목도 아니고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도 아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의 측정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한 금융상품은 계속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항목으로 측정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⑤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의 다른 재분류사항은 당사의 재무상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ii)리스채권, iii)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그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 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 적용일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자산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변경 중 하나는 발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당사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부채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⑤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④ 일반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회피회계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일 관련 공시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연결실체가 기존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했었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재분류하기로 선택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일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도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039호	재측정	기준서 제1109호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2,970,098	-	22,970,098
출자금 등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0,020	-	100,020
임차보증금 등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022,987	-	5,022,987
장단기금융상품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328,983	-	4,328,98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7,643,148	-	17,643,148
차입금 및 사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22,902,391	-	122,902,391
임대보증금 등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680,962	-	680,962
금융보증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80,743	-	180,74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에 따른 추가 손실충당금은 없으며, 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함에 따라 재분류하도록 선택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도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인식을 위한 5단계 모형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특정 사례를 다루기 위하여 광범위한 규범적인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규정의 내용 및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은 아래 '(6) 수익인식'에 기재되어 있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아니며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영향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는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적용하는 방법(완전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수정소급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② 리스의 식별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당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여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 제1116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리스의 정의는 주로 통제모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식별되는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 경우에 사용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당사는 동 기준서상 변경된 리스의 정의가 리스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계약의 범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ㄱ. 운용리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았던 운용리스의 회계처리가 변경되며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 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 측정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
- 현금지급액을 현금흐름표에서 원금(재무활동)과 이자(영업활동)로 구분하여 표시

동 기준서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종전 규정을 대체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 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에 대해 리스료를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ㄴ. 금융리스

금융리스에서의 자산과 관련하여 동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의 주된 차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의 측정에서 발생합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요구되었던 최대보증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하여 인식합니다. 최초 적용일에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리스자산을 사용권자산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동 기준서 하에서도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한 공시사항이 변경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도상환특성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옵션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조기상환의 원인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손상규정 포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사항(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손실을 배분하거나 손상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 장부금액의 조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기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래를 최초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개정사항은 관련된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른 이후에도 특정 차입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계산할 때 일반차입금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03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기업이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측정 대상 이전보유지분은 공동영업과 관련하여 인식되지 않은 자산, 부채 및 영업권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당사자가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업이 보유한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사항들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를 결정할 때 갱신된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 전후에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하고, (확정급여제도가 초과적립상태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동 기준서는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 인식 후에 결정되며,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측정과 관련된 문단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제도의 변경 후의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해 재측정에 사용된 갱신된 가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순이자의 경우, 개정사항에서는 제도의 개정 이후 기간 동안의 순이자는 동 기준서 문단 99에 따라 재측정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여산정함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대한 이번 개정사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제도의 개정, 축소 및 정산에만 점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개정)

동 개정사항은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와 관련하여 문단 한129.1에서 언급하는 '계약'의 의미를 '개별 계약'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더라도 공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수익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한45.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용역계약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한129.1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수익 기준서에 비해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대상 계약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제정)

동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은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해석서를 완전소급법을 적용하거나 비교정보를 소급해서 재작성하지 않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예)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즉 당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 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당사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6) 수익인식

당사는 은행 기계화코너에 대한 일괄관리 및 은행공동 CD/ATM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1) 재화의 판매 (2) ATM 관리 등 용역 제공 (3) 기타 서비스제공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7)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주석 2.(9)참고)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9)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 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1)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 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40년
기계장치	5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임차점포시설물	4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원가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최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거나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을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 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경제적·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건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과거 경험상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당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0)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 · 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가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련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란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

식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9)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

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채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상세한 주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p>제2조 (목적 및 사업)</p> <p>① (생략)</p> <p>② 전항에 규정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한다.</p> <p>1~7.(생략)</p> <p>8. 부동산업(매매, 임대, 주차장 등)</p> <p>9~16.(생략)</p> <p>17.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전기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p> <p>18~25.(생략)</p>	<p>제2조 (목적 및 사업)</p> <p>① (생략)</p> <p>② 전항에 규정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한다.</p> <p>1~7.(생략)</p> <p>8. 부동산업(매매, 임대, 주차장 등) 및 건물관리업</p> <p>9~16.(생략)</p> <p>17.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전기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p> <p>18~25.(생략)</p>	<p>-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p>
<p>제7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p> <p>① (생략)</p> <p>② 이 회사의주식은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으로 한다.</p>	<p>제7조 (주식의 종류)</p> <p>① (생략)</p> <p>② (삭제)</p>	<p>-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p>
<p>신설</p>	<p>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p>	<p>- 상장법인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관에 근거를 신설</p>

<p>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p> <p>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임직원에게(이사 제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창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법령 및 다음 각 호에서 특별히 정한 자는 제외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p>	<p>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p> <p>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 범위 내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창립과 경영, 해외영업,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각호 삭제)</p> <p>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p>	<p>-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및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법령 내용 반영</p> <p>- 주식매수선택권 제외 대상자를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문구 조정(각호 삭제)</p> <p>- 교부 주식 내용 구체화</p> <p>-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조정 및 법령상 예외사유 추가</p>
---	--	--

<p>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⑨ 제①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⑨ 제①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로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⑪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을 준용한다.</p>	<p>- 주식매수청구권의 법령상 취소사유 추가</p> <p>-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법령상에 규정된 행사 자격을 정관에 명시</p> <p>-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해 발행된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 명시</p>
---	--	---

<p>제13조(주식명의개서)</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또는 재교부,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④ (생략).</p>	<p>제13조(명의개서대리인)</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p> <p>④ (생략).</p>	<p>-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 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p>
<p>제 15 조 (주주등의 주소 및 인감신고)</p> <p>①~⑤ (생략)</p>	<p>제15조 (본조 삭제)</p>	<p>- 주식 등이 전자등록됨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p>
<p>제16 조의4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6 조의4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 제15조 삭제에 따라 본조 수정</p>
<p>제24조 (이사 및 감사)</p> <p>이 회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p>	<p>제24조 (이사 및 감사)</p> <p>① 이 회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를 두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②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 상법 규정을 정관에 반영</p> <p>-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p>
<p>제26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p> <p>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② (삭제)</p>	<p>제26조 (이사의 임기)</p> <p>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 이사의 임기 변경(2년→3년)</p>

<p>제33조(감사위원회의 직무와 의무) ①~③(생략).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⑤ (생략)</p>	<p>제33조(감사위원회의 직무와 의무) ①~③(생략). ④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p>	<p>-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 반영</p>
	<p>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9년3월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5조, 제16조의4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제26조 규정은 이 정관 변경 후 새로이 선임 또는 연임되는 이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정관 변경 전에 선임되어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정관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개정일부터 시행하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조항은 동법의 시행령의 시행일이 2019년 9월 16일로 예정됨에 따라 별도로 시행일을 정함 - 이사 임기를3년으로 변경하되 재임중인 이사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 전 임기인 2년을 적용함</p>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규상	1966.8.15.	미해당	-	이사회
김명수	1969.5.20.	미해당	계열회사의 임원	이사회
우영제	1954.6.25.	해당	-	이사회
송형근	1957.10.11.	해당	-	이사회
총 (4)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박규상	한국전자금융(주) 현금사업부문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전자금융(주) 금융영업부장 한국전자금융(주) 금융사업본부 본부장 한국전자금융(주) ATM사업본부 본부장 (現) 한국전자금융(주)현금사업부문 부문장	-
김명수	NICE홀딩스 CSO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신용정보 전략기획단장 NICE홀딩스 전략기획본부장 NICE홀딩스 전략기획1실장 (現) NICE홀딩스CSO	후보자가 근무하는 회사 (주)NICE홀딩스와 경영 자문 관련 계약 체결
우영제	써니캐피탈대부(주)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국민리스(주) 이사 한국전자금융(주) 운영본부장 한신평네트웍스(주) 대표이사 (現) 써니캐피탈대부(주) 대표이사	-
송형근	(주)매일애드 대표이사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주)매일신문사 독자서비스국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외래교수 (주)매일신문사 전무이사 (現) (주)매일애드 대표이사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우영제	1954.6.25.	해당	-	이사회
송형근	1957.10.11.	해당	-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우영제	써니캐피탈대부(주)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국민리스(주) 이사 한국전자금융(주) 운영본부장 한신평네트웍스(주) 대표이사 (現) 써니캐피탈대부(주) 대표이사	-

송형근	(주)매일애드 대표이사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주)매일신문사 독자서비스국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외래교수 (주)매일신문사 전무이사 (現) (주)매일애드 대표이사	-
-----	--------------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3)	7(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2억원	12억원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진의 책임경영 및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 일치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구자성	등기임원	대표이사	기명식보통주	40,000주
박규상	등기임원	현금사업부문장	기명식보통주	20,000주
임훈택	미등기임원	주차/KIOSK사업본부장	기명식보통주	20,000주
총(3)명			기명식보통주	총(80,00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자기주식 교부, 차액 정산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80,000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 2019년 3월 21일 ② 행사기간 : 2022년 3월 22일부터 2026년 3월 21일까지 ③ 행사가격 : 기준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2019년 3월 21일) 직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증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정할 예정임	-
기타 조건의 개요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34,645,728	총 발행주식수의 15%	기명식보통주	5,196,859	5,196,859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19년	-	-	-	-	-	-	-
2018년	-	-	-	-	-	-	-
2017년	-	-	-	-	-	-	-
계	-	총(-)명	-	총(-)주	총(-)주	총(-)주	총(-)주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